

대정부 건의 ①

사적복제 보상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본고는 본회가 지난 7월 9일 문화체육부가 입법예고 한 저작권법 개정안 중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의 도입을 저지해 줄 것을 문화체육부, 상공자원부, 경제기획원, 청와대, 민자당 등에 건의한 내용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내용

현행	개정(안)	건의(안)	사유
<p>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p> <p>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p> <p>(신설)</p>	<p>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p> <p>(좌 동)</p> <p>제27조의 2 (사적복제 보상금)</p> <p>①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제27조의 복제에 이용되는 녹음기, 녹화기, 녹음 또는 녹화용 수록매체 및 복사기를 제작 또는 수입 하여 맨 처음 배포하는 자가</p>	<p>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p> <p>(좌 동)</p> <p>(삭제)</p>	

현행	개정 (안)	건의 (안)	사유
<p>제70조(보호기간)</p> <p>저작인접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20년간 존속한다.</p> <p>제98조(권리의 침해죄)</p>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대한민국내에서 그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의무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로부터 그 제작 또는 배포와 관련한 자료 제공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p> <p>⑤ 보상금의 금액, 청구 절차, 관리 및 분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0조(보호기간)</p> <p>..... 50년간 존속한다.</p> <p>제98조(권리의 침해죄)</p> <p>.....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70조(보호기간)</p> <p>..... 30년간 존속한다.</p> <p>제90조(권리의 침해죄)</p> <p>.....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국내에서 외국의 저작권 보호도 감안</p> <p>○ 일시에 보호기간을 2.5배나 연장하는 것은 과보호</p> <p>○ 일시에 벌금을 10배로 증가코자하는 것은 무리</p> <p>○ 더욱이 체형을 병과 한다는 점을 감안</p>

현행	개정 (안)	건의 (안)	사유
1.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공연, 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1.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43조 제2항 및 제65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제6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1. (좌 동)	
2-3(생략)	2-3(현행과 같음)	2-3(현행과 같음)	
(신설)	4. 제27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보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제공한 자	4. (삭제)	○ 제조업계는 공과금이 아닌 저작권, 재산권 등을 위해 사적 복제 보상금 회수의 협조자, 협조에 불성실하다고 체형과중 벌과금을 부과 하는 것은 어불성설
(신설)	② 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좌 동)	○ 제조업계는 사적 복제 행위 이전에 미리 보상금을 내는 데도 막대한 제원소요와 금리손실 발생 ○ 사적 복제 보상금 도입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 내재 (별첨자료 자료)

<자세한 내용은 9 page 참조>

S/W 도입대가의 원천소득 징수 방침 철회 건의

1993. 6.23

본고는 국제당국이 S/W 도입대가에 대해 원천소득을 소급 추정한다는 방침을 확정,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국제경쟁국의 약화로 위축되고 있는 정보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로 보고 업계의 뜻을 모아 상공자원부, 재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이의 철회를 건의한 내용이다

1. 소프트웨어의 개요

가. 소프트웨어의 정의

소프트웨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공장자동화 설비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시된것(프로그램)을 말한다.

나. 소프트웨어의 도입 증대

오늘날 세계는 컴퓨터를 주축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정보화사회의 이행이 급속한 속도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기업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가정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누구나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고도정보화 시대로 급속히 진전되어 가고 있다.

이에 신정부에서는 2000년대 고도 정보화시대에 대비키 위해 신경제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코져 정보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육성지원 정책을 마련중에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기계부분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

급이 필수적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하드웨어는 상당한 기술축적 및 양산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나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 유치단계로 고도 기술집약과 개발에 따른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소프트웨어의 도입 형태 및 국세청의 과세 방침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방법으로는 신용장에 의한 도입방법(과기처장관의 수입추천)과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구 분	도 입 목 적	도 입 방 법	세 금 부 과
대의무역법에 의한 수입(L/C수입)	• 제품설계 및 생산성향상을위한 첨단설비 운용 소프트웨어 • 상품단순판매용 소프트웨어	L/C거래	관세 및 부가세 부과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	• 기술, 특허(저작권)에 대한 특허사용 및 양도 허용	기술도입 계약체결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및 부가세 대리납부

소프트웨어를 과기처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 신용장에 의하여 도입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방침으로는 국세청은 소프트웨어의 도입에 따른 대가의 대외지급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국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소득사용료로 보고 이에 대한 원천 소득을 징수할 방침이며 또한 '88년 6월이후 도입된 소프트웨어까지 소급하여 추징코자 하고 있다.

3.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득세 부과 문제점

가 조세행정의 일관성 결여

과세기관별 도입 소프트웨어의 해석 및 과세방법을 보면 관세청은 소프트웨어를 재화(유체물)로 보아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과세근거: 부가세법 제1조 1항 및 제16조 3항)

국세청은 소프트웨어를 무형재화(기술 및 정보의 사용대가)로 보아 기술사용료 원천징수 및 부가세 대리 납부를 하고 있다.(과세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재무부 예규: 국조 22601-10 22('89. 9. 27),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동일한 대상을 과세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조세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납세자에게 커다란 혼선을 줌은 물론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내국세로 국세청의 과세근거가 우선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 위임한 바 이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물품에 대해 다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 과세 관행상 모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소프트웨어 수입시 이를 재화로 보아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 과거분까지 소급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급과세금지의 원칙"등 과세 관행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다. 소프트웨어를 재화(유체물)로 보는 내국세 관련 법규 및 근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는 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수주, 출하 및 판매 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 본체,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 기술 설비로서 투자세액의 공제를 허용한다.

국세 심판례(국심 81서 792., '81. 12. 20)는 전산프로그램 도입 제비용중 시스템 운용 프로그램은 자본적 지출로 본다.

기타 예규(법인 22601-686, '85. 3. 5)는 하드웨어 작동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가액에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도입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신용장이 없는 송금방식에 의하여 도입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를 물품으로 보아 L/C방식에 의해 수입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다른 내국세 관련법규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를 설비 또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용역의 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확대 해석함은 무리이다.

라. L/C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원천징수 불가능

소프트웨어가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라 하더라도 기도입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미 세액의 원천징수 없이 대가의 지급

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의 실질적인 납세의 무자인 외국업체에게 이를 소급시키다는 데에는 우리가 따르고 또한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의 경우에는 무역외 지급인증에 의해 수입업자가 직접 송금하게 됨에 따라 원천징수가 가능하나 신용장 방식에 의한 경우 외국 S/W공급업자는 물품선적후 자국의 매입은행에서 수출대금을 미리 회수하고 외국의 매입은행은 이를 국내 L/C 개설은행에 추심하여 결제됨으로써 원천징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결국은 거래상 약자위치에 있는 국내 수입업체가 이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내국세 부과를 통해 국고 해외유출을 방지한다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국내업체들은 막대한 자금 압박을 받게되어 기업의 도산을 가져오는 물론 사회전반의 정보화 추진의 후퇴로 국내 기간산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정부의 정보산업 육성정책에도 상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마. 국가간 조세 마찰 우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부과는 GATT 관세평가위원회 제10차 회의('89. 9. 24)에서 결정한 다음의 두가지 방법을 각국이 택일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달매체가액+소프트웨어 내용물 가액에 관세부과(내국세 미 부과)

- 전달매체가액에만 관세 부과(소프트웨어 내용물 가액에는 내국세 미 부과)

우리나라는 제1항을 선택하여 「전달매체+소프트웨어 내용물」 가액에 대해 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업자는 공급업자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 수입업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에 이어 내국세 부과를 병행한다면 이는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것으로 국가간 조세마찰의 우려가 매우 크다.

※ 소프트웨어 도입시 외국의 과세현황

1) 전달매체가액+소프트웨어 내용물 가액에 관세 부과(내국세 미 부과) 영국,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벨기에 등

2) 전달매체가액에 관세부과, 소프트웨어 내용물가액에는 내국세 부과 미국, 일본, 독일, 남아공, 스페인, 룩셈부르크, 호주, 프랑스 등

3)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관세부과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세까지 부과하려는 사례는 전혀 없으며 국가간 조세마찰이 우려됨

4. 소프트웨어 과세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환경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정도 성장되었으나 기술수준 등의 낙후로 인해 고급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이는 컴퓨터, 자동화 설비 등에 사용되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고도화가 진행중이며 정보화사회의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는데 국제여건은 무역, 기술, 자본 등의 갖가지 장벽으로 그 진행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 자본 수준이 선진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열세에 있고 수출은 품질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해 과세시 세부담은 우리 기업의 부담으로 되어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도입 계약방식외에 신용장에 의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한다는 것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프트웨어 도입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국가재정 측면에서는 세수의 증

가가 있겠지만 기업측면에서는 사용료 소득 부과 금액만큼의 추가 비용부담이 늘어나 원가로 전가되어 가격상승의 요인이 되므로 국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에 큰 지장을 초래,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축시키고 동시에 대내적으로 소비자 물가에도 상승요인이 되어 국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결국 이와 같은 우리의 상황에서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을 저해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5. 도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득세 부과방침 개선 건의

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소득 및 소급징수 방침의 철회

신용장에 의해 외국으로 부터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이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 지급한 기술 및 정보의 대가로 보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려는 국세청의 방침(재무부 국조 22601-1022, 서울지방 국세청 국조 22630-0076)은 이미 재화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부과한 관세청의 견해와는 해석을 달리하여 동일 물건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조치라 할 것이다.

또한 1988년 6월 도입분부터 이를 소급적용하려는 방침은 국세의 소급 과세를 금지하는 세정의 기본 취지(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도 반하는 과세권의 행사가 될 것이다.

이는 외국의 공급업자에게 소득세를 부담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국고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려운 형편임에 비추어 볼때 결국은 도입업자가 이를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업체의 도산을 가속화하여 사회정보화의 촉진에 저해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 가중에 따라 국내 정보산업의 위축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으며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정보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방침과도 크게 상충되는 바 도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천소득 부과 및 소급 징수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합리적인 과세 기준의 정립

현재 동일 대상에 대해 관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 따라 해석을 달리함에 따라 과세의 방법이 상이하고 이중과세가 되는 논리적 모순점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에는 도입 소프트웨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재화로 보아 도입가액의 9%를 관세로 부과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해 다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거 10~15%의 사용료 소득을 부과한다는 것은 동일 대상에 대해 해석을 달리해 이중으로 과세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과세에 앞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있어야 하겠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과 산업의 현황 등을 고려한 과세기준을 확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도입에 대해 새로운 과세기준을 채택,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후에 입법예고 등의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 가도록 하고 신용장 방식에 의한 도입시의 원천징수방법에 대해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미정립된 법규하에서의 소득세 추징의 조치는 없어야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정립하여 일관된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